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개요

사 업 기 간	☑연례반복, '13년~계속
사 업 위 치	-
총 사 업 비	총1,600,000천원 / 전액시비
사 업 내 용	자치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지역 클러스터 조성
사 업 형 태	□직접수행 ☑자치단체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
사업시행주체	자치구(공모로 선정)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지역보조심의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□	☑	□	□	□	☑	□	□	□	□
경상	투자								
☑	□								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
지원형태	법령근거	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	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	
운영비보조		

□ 사업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일자리노동정책관	사회적경제담당관	강선섭 2133-5480	황성원 2133-5493	김소연 2133-5499

2 예 산 (안) 설 명

□ 예산(안)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5예산	2016예산 (A)	2017예산(안) (B)	증감 (B-A)	증감률
자치단체 자본보조	2,000,000	1,600,000	1,600,000	-	-

□ 예산(안)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년 예산(안)	
자치단체 자본보조	▶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지원	**1,600,000**
	- 800,000천원 × 2개구	1,600,000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
○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업무 및 협업공간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

○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개방·공유 공간으로 기획하여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

□ 사업근거

○ 법령상 근거

-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(시설비 등 지원)
-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(시설비 등 지원)

○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
-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(사회적경제담당관-3102호, '13.03.15.)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'13년~계속

○ 지원대상 : 연면적 250㎡(전용공간) 이상 유휴 공간 확보 자치구

○ 지원규모 : 2개소, 개소당 8억원 이내

○ 사업내용 :

-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치구에 리모델링(신・증・개축) 공사비 지원
- 사회적경제조직의 업무・협업 공간, 지역 사회와 주민 공유공간 등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

□ 추진경위

○ '13년	성북구, 영등포구, 관악구 선정 및 시비 지원(각 10억원)
○ '14년	노원구, 양천구, 동작구 선정 및 시비 지원 노원구 및 양천구 각 8억원, 동작구 '15년 예산으로 7억원 지원
○ '15년	성동구, 도봉구 선정 및 시비 지원 성동구 9억원, 도봉구 4억원 및 '16년 예산 5억원 추가 지원
○ '16.6월	서대문구, 용산구 선정 및 시비 지원(서대문구 7억원, 용산구 4억원)

※ **2017년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**
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에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협업에 의한 동반성장 기반과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 추진 필요

□ 사업추진 절차

○ 집행절차

- 기본계획수립(시) ⇒ 공모사업 통지(시→자치구) ⇒ 사업계획서 제출(자치구→시) ⇒ 현장실사(시) ⇒ 사업계획 심사 및 선정(시) ⇒ 보조금 신청(자치구→시) ⇒ 보조금 교부(시→자치구) ⇒ 자치구 사업수행(자치구→시) ⇒ 경과보고 및 정산(자치구→시)

○ 계약체결

- 해당사항 없음

□ 2017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세부내용
계		**1,600,000**	
기본계획수립 및 사업공모	’17.01~02	-	기본계획수립 및 사업공모
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 심사 및 선정	’17.02	-	신청 자치구 사업계획 심사 및 선정
시비 지원 및 공간 조성 자문회의	’17.03	1,600,000	17년 선정 자치구 2개소 지원

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4년도	- 노원구 : 8억원 지원, ’15.10. 수탁기관 선정, ’16.04. 개관 - 양천구 : 8억원 지원, ’16.11. 개관 예정
2015년도	- 동작구 : 7억원 지원, ’16.03. 개관 - 성동구 : 9억원 지원, ’16.12. 개관 예정 - 도봉구 : 9억원 지원(‘15년 4억원, ‘16년 5억원), ‘17.03. 개관 예정
2016년도 (10월 기준)	- 서대문구 : 7억원 지원, ‘17.01. 개관 예정 - 용산구 : 4억원 지원, ‘17.03. 개관 예정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기반 마련

○ 지역 사회적경제 거점 조성으로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

5 최근 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3	3,000,000	-	-	-	3,000,000	-	-
2014	1,600,000	-	-	-	1,600,000	-	-
2015	2,000,000	-	-	-	2,000,000	-	-

사회적경제 특구 운영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개요

사 업 기 간	☑연례반복, '15년~계속
사 업 위 치	-
총 사 업 비	총1,650,000천원 / 전액시비
사 업 내 용	지역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려는 자치구 민관협력 사업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특구로 육성
사 업 형 태	□직접수행 ☑자치단체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
사업시행주체	자치구 사회적경제 특구 민관협력 추진단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지역보조심의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□	☑	□	□	□	☑	□	□	□	□
경상	투자								
☑	□								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
지원형태	법령근거	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	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	
운영비보조		

□ 사업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 장	주무관
일자리노동정책관	사회적경제담당관	강선섭 2133-5480	노수임 2133-5482	이수연 2133-5485